

신탁계약 변경 대비표

- 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JP모건글로벌투자적격등급회사채증권투자신탁(H)[채권-재간접형]
- 2. 변경시행 예정일: 2024년 11월 8일
- 3. 변경사항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(종류S 등 정의 변경)에 따른 기재정정
- 4. 상세 변경사항:

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(종류S 등 정의 변경)에 따른 기재정정</p>	<p>제22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4. 종류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</u></p> <p>15. 종류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</u></p>	<p>제22조의2(수익증권의 판매기준)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.</p> <p>14. 종류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 <p>15. 종류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

	<p>16. <u>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</u></p>	<p>16. <u>종류 S-P(퇴직)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u></p>
--	--	---